

충청북도세조례증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2000. 12. 22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0년 12월 16일

○ 회부일자 : 2000년 12월 18일

다. 상정일자 :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제2차정례회

○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00.12.19),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박 재 식)

가. 제안이유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던 교육세가 지방세로 전환되어 지방세법에 도세의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도세조례에 신설하고, 기타 일부 조문을 정리하는등 개선·보완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지방교육세 관련 규정 신설

- 지방세법에 지방교육세 관련 규정이 신설(법 제260조의 2 내지 제260조의 6)됨에 따라, 세목·납세의무자·세율 및 신고납부 등 지방교육세 관련 기본사항을 조례에 규정함.

- 지방교육세는 등록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가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함. (안 제76조)
- 지방교육세의 세율은 다음 세목의 세액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안 제77조)
 - 등록세액의 100분의 20
 - 주민세균등할의 세액의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100분의 25)
 -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50
 - 종합토지세액의 100분의 20
- 납세의무자가 등록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 납부하는 때에는 지방교육세도 함께 납부하도록 함. (안 제78조 제1항)
- 시장 또는 군수가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균등할·재산세·자동차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세도 함께 부과·징수하도록 함. (안 제78조 제2항)

○ **도세징수교부금 교부규정 보완**

시군에서 도세를 징수할 경우 시군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에 있어서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세목에 대하여는 도세징수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도록 함. (안 제18조 제1항)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중과규정 삭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일정한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취득세가 중과(일반세율의 5배) 되는 규정이 지방세법에서 폐지됨에 따라 도세조례에서도 이를 삭제함.(안 제23조 제2항)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종 만)

- 충청북도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 국세인 교육세중 지방세에 부가(附加)되어 징수되고 있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면서 일부 세율을 인상(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40→100분의 50)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을 폐지하여 산업활동의 간접지원과
 - 현행 지방세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이 지난 12월 15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1가구 1대 초과차량 등록세 중과제도는 1999년도에 폐지되어 관련조항의 정비를 한 것이나, 이번에 삭제되는 안 제48조제2항은 누락된 것으로 이러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 보완설명이 필요한 사항으로
 - 부칙 제2조의 담배소비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의 징수기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 사유
 - 부칙 제4조의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2001년부터 승용자동차로 전환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의 지방교육세 징수를 2004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 사유
 - 조례 개정으로 징수되는 2001년도 세목별 지방교육세 추계액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 도민 부담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의 제·개정시는 심사에 참고가 되도록 반드시 산출근거의 제시가 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수정안요지

가. 수정이유

개정안 제18조제1항의 단서조항은 시군에서 도세를 징수할 경우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세목에 대하여는 징세비가 소요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도세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이에 해당되는 세목이 지방교육세뿐이나 이를 도세로 표현하여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어 수정함.

나. 수정 주요골자

조문중 해석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용어의 정비(안 제18조제1항 단서조항) : 도세 → 지방교육세

7. 심 사 결 과 : 수정안가결

8. 소수 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0. 12. 19

제안자 : 박종기의원

1. 수정이유

개정안 제18조제1항의 단서조항은 시군에서 도세를 징수할 경우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세목에 대하여는 징세비가 소요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도세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이에 해당되는 세목이 지방교육세뿐이나 이를 도세로 표현하여 해석에 논란의 소지가 있어 수정함.

2. 수정 주요골자

조문중 해석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용어의 정비(안 제18조제1항 단서조항) : 도세 → 지방교육세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8조제1항의 단서중 “도세”를 “지방교육세”로 한다.

조 문 대 비 표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8조(도세징수교부금)①시장·군수가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한 때에는 도지사는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을 매분기마다 그 처리비로 당해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도세를 당해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p>	<p>제18조(도세징수교부금)①----- ----- ----- ----- ----- ----- <u>지방교육세</u> ----- ----- -----</p>